

商標法 및 意匠法改正 主要內容

目 次

- I. 改正作業推進 背景
- II. 改正方向
- III. 主要 改正內容

〈이번號에 全載〉

I. 改正作業推進 背景

1. 現行 商標法은 1949年에 制定되어 7次에 걸쳐 改正 되었고,
2. 意匠法은 1961年에 制定되어 5次에 걸쳐 改正되었으나,
3. 改正內容이 斷片的인 改正에 그쳐 現代法令 으로서 不合理하거나 未備한 點이 많아
4. 工業所有權關係法令의 全面的인 改正의 必要性이 擡頭되어 4 法 整備의 一環으로 推進됨.

II. 改正方向

1. 商標法
 - 가. 國際化 趨勢에 副應
 - 나. 商標權者와 需要者의 權益調整
 - 다. 審判制度의 改善
 - 라. 不合理한 法條文의 醇化 整備
2. 意匠法
 - 가. 國際化 趨勢에 副應
 - 나. 特許法 改正에 따른 關聯條文의 體制整備
 - 다. 不合理한 法條文의 醇化整備

III. 主要 改正 内容

商標法

1. 主要 爭點事項

- 商標權 移轉 (27條 : 11條의 3)
商標權 또는 出願中인 商標 (聯合商標包含)의 移轉에 있어 現行制度는 指定商品 을 全部 移轉하는 경우만 許容되고 있으나 이를 指定商品別 (다만, 類似商品은 함께 移轉)로 分離하여 移轉할 수 있도록 改正할 것인가의 與否
- 更新登録時 使用實績 提出 (20條 2項)
存續期間 更新出願制度에 있어 現行制度는 3年內 使用實績을 提出토록 하여 更新許容을 하고 있으나, 이를 商標의 使用증거 없이도 更新登録을 許容할 것인가 與否
- 商標 使用權 (29條 ~ 32條)
現行 商標 使用權은 專用, 通常使用權의 區分 없이 契約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區分시켜 效力を 別送規定할 것인가 與否
- 商標 登錄 取消 事由 (45條 1項 3號)
登錄商標의 不使用으로 因한 登錄取消審判의 取消事由에서 登錄商標가 取消審判請求時에도 계속 不使用 狀態에 있어야 하는지, 또는 過去 一定期間 不使用 事實만으로 現在 使用中인 商標를 取消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與否

2. 新設制度

- (1) 公共機關의 監督用 및 證明用의 記號 또는 印章保護 (第9條 第1項第1號)
파리協約同盟國內의 公共機關이 使用하는 監督用 및 證明用의 記號나 印章과 類似한 商標의 商標登錄을 不許토록하는 파리協約內容 (協約 6條의3)遵守
- (2) 取消審判이 請求된 後 商標權을 抛棄하고 再出願하는 경우 登錄不許 (第9條 第5項)
○ 商標의 不使用을 理由로 하여 登錄取

消審判이提起된 경우 商標權者는 商標不使用을理由로 한 그登錄의取消를回避하기 위하여當該登錄商標를自進하여 抛棄 또는登錄의抹消措置를取하고新規로出願하여登錄을받으므로써現行不使用으로因한登錄商標取消審判制度의實效性을沮害하는弊端을是正하기 위하여商標權者が取消審判이提起된후商標登錄을抹消,抛棄하고그와同一 또는類似한 경우는現行審判에의하여取消된商標의 경우와같이3年間登錄을不許함.

- (3) 商標權에 대한質權制度許容(第32條)
商標權 또는 使用權에 대한質權規定이 없는未備點을補完하기 위하여商標權 및 使用權의 質權制度新設
- (4) 登錄商標의指定商品一部無效 또는一部取消制度許容.
(第45條, 第46條, 第47條)
現行制度는登錄商標에無effect由가一部指定商品에만存在하는 경우도 그商標自體가無effect로되어있어商標權者保護에未洽하며,取消의 경우는一部商品에만使用하고있으면取消를면할수있도록되어있어不使用하고있는商品에까지他人의商標選擇權을制限하므로그事由에該當되는一部指定商品만을無effect 또는取消시킬수도있도록制度를新設하고있는登錄商標는保護를強化하고不使用하고있는指定商品의商標는他人의使用이可能토록商標選擇領域擴大.
- (5) 補正却下 및 補正却下不服抗告審判制度新設(特許法改正內容準用)
現行制度下에서는出願人이提出한補正書가要旨變更인 경우 그補正書를採擇할수없음을出願人에게文書로通知하고, 그意見을들을수있도록만

되어있어,
出願人이審查官의決定에대하여不服하고자하는경우에는同出願에대한最終拒絕處分을받았을경우에限하여拒絕査定不服抗告審判으로만다루게되므로,補正不採擇에대한救濟手段이없어權利保護가未洽하므로,補正書를不採擇할時候에는 이를却下處分토록하고,同却下處分에대하여는別途의不服抗告審判制度에의하여救濟를받을수있는制度를新設함.

3. 改正事項

- (1) 出願人 및 商標權者 便益圖謀(第9條第3項)

商標權者와商標登錄出願人이出願時點에는他人이었으나讓受에의거出願後同一하게된경우는登錄을許與토록하여出願人또는商標權者便益圖謀

- (2) 正當權利者の保護(第9條第4項)

著名한他人의姓名·商號·著名商標等의不登錄事由를違反하여登錄된것을理由로無effect 또는取消審決이確定된경우그正當權利者が出願을할때에는他人出願不許期間(1年)에구애됨이없이登錄可能토록함.

- (3) 業務標章制度改善(第10條第4項)

業務標章登錄制度를惡用하여商標로出願하여야할것을業務標章으로出願하여登錄을받아實際로登錄된것같이使用하는것을防止하기위하여業務標章은非營利業務를實際로經營하고있는때에만登錄을許容토록非營利業務經營事實立證을義務化함.

- (4) 商標의分割·變更時限의改善(第1條의2, 第14條, 第21條의2)

現行分割·變更時限이査定 또는審決의確定時까지로되어있으나이를査定의通知發送時까지로하고拒絕不服抗告審判을請求하는경우는審判請求後30日內까지로改善하여審查의能率性

圖謀

(5) 補正制度의 改善 (第14條의 3)

- 現行 補正規定을 “節次에 관한 補正事項”과 “實體的要件에 대한 情報事項”으로 區分하여 規定하고
- 補正時限을 現行 拒絕查定된 것은 查定 또는 審決의 確定時까지 되어 있고 公告決定送達 된 것은 異義申請 答辯期間內 等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拒絕查定의 경우도 查定通知書 發送時까지로 하여 公告決定된 出願과 均衡을 維持하고 審查의 能率性 圖謀.

(6) 商標登録出願의 承繼制度改善 (第11條의 3)

出願商標의 移轉은 未確定權利의 承繼이므로 商標權의 移轉과 分離하여 規定하고 日刊 新聞公告制度를 省略하여 承繼節次를 簡素化함.

(7) 拒絕理由의 補完 (第16條 第5號, 第6號, 第22條 第1項 第5號)

拒絕理由에 대한 未備點인 出願商標의 指定商品 不明確, 更新登録出願에 있어 原登録商標와 商標相異 또는 指定商品相異 等의 경우 拒絕根據를 補完함.

(8) 商標移轉制度改善 (第27條, 第34條)

商標權을 營業과 分離하여 讓渡할 수 있게 하여 商標權 讓渡를 自由롭게 現實化하고 營業廢止로 因한 商標權의 自動消滅規定을 削除하여 商標權 保護.

(9) 取消審判制度改善 (第45條第1項第1號, 第3號, 第3項)

- 商標權의 取消事由中 商標權者의 使用默認에 의한 取消는 使用默認의 立證이 現實的으로 어렵고, 無斷使用者가 登錄商標를 取消하는데 惡用될 수 있으므로 이를 取消事由에서 削除 함.
- 登錄商標使用에 의한 取消의 경우

現行 不使用期間 1年은 業務準備期間等

- 을 考慮할 때 너무 짧으므로 3年으로 延長하여 商標權者를 保護하고 外國과의 均等 維持.
- 商標權의 不使用 取消審判에 있어 現行制度는 不使用事實을 審判請求人이 立證하게 되어 있어 그 立證이 現實的으로 어려워 不使用 取消審判制度의 實益이 적으므로 商標의 使用義務가 있는 商標權者에게 使用事實을 立證도록 하므로써 取消審判의 實效性을 提高하고 國際化 趨勢에도 副應함.

(10) 無效審判制度改善 (第44條 第1項)

- 商標權의 法的 安定性을 위한 無效審判의 除斥期間認定 規定中 先願主義에 違反하여 登錄된 경우도 先登録商品의 경우와 같이 除斥期間을 認定하여 均衡을 維持함.

(11) 其他 改善事項

- 各 條文의 難解한 文句 및 不適切한 表現을 醇化整備.
- 特許法 改正에 따른 準用條文의 整理.

意匠法

1. 新設制度

- (1) 補正却下 및 補正却下不服審判制度新設 (特許法 改正內容 準用)
《商標法 改正 (案)과 같음》

- (2) 國際出願에 關聯된 出願變更의 特例規定新設 (第13條의 2)

特許協力條約에 의하여 出願되는 國際出願을 國內意匠登録으로 出願變更할 경우 國내出願節次를 跳은 後에 限하여 出願變更를 認定할 수 있도록 함.

2. 改正事項

- (1) 國際公知主義採擇 (第5照1項1號)
出願前에 外國에서만 公知된 意匠일

경우에는 登錄을 許與하고 있으나
外國에서 반포된 刊行物에 게재된 意匠
에 대하여 登錄을 不認定하고 있는 경우
와 均衡을 維持케 하여

工業所有權制度의 國際化 및 先進化를
기할 수 있도록 國際公知主義로 改善
함.

- (2) 容易創作適用 規定改善 (第5條第2項)
出願前 公知 또는 刊行物에 記載된
意匠에 의한 容易創作規定을 削除하여
新規性(第5條第1項)과 容易創作性 判繼
規定(第5條第2項)이 區分 適用되도록
改善함.

- (3) 職權拒絕查定制度改善 (特許法改正內容
準用)
審查官이 登錄查定處分後에도 새로운
拒絕理由를 發見하였을 때에는 登錄設定
前까지는 拒絕查定處分 할 수 있으나

行政處分의 安定性과 信賴性을 위하여
職權拒絕은 登錄查定處分前까지만 可能
하도록 改善함

(4) 出願補正制度 改善(第13條의3)

出願人이 出願後 흠결에 대하여 自進補
正할 수 있는 時期를 查定 또는 審決이
確定되기 前까지로 規定하고 있으나
查定의 通知書가 發送되기 前 또는
拒絕查定不服抗告審判請求日로 부터
30日內에 한하도록 하여 審查審判의
迅速性 圓謀.

(5) 無效審判請求除斥期間削除 (第51條)

-外國에서 반포된 刊行物에 개제된
意匠의 경우 이해 당사자가 登錄日로
부터 5년이 經過한 후에는 無效審判을
請求할 수 없도록 規定하고 있으나
이를 削除하여 언제든지 無效審判請求
를 할 수 있도록 함. (♣)

案 内

工業所有權 相談室 운영

- ◎ 相談日時 : 每日 10:00~16:00
(土曜일은 10:00~12:00)
◎ 相談料 : 無 料
◎ 相談依頼者 : 本會 會員企業(非會員일 경우
特請에 限함)
◎ 相談分野 및 範圍
1) 出願 · 異議申請 · 登錄節次 및 要領
2) 工業所有權紛爭의 豫防 및 事後處理
3) 社內 特許管理要領 · 職務發明補償制度 運
用方案

- 4) 工業所有權 實施斡旋 및 活用
5) 企業內 工業所有權專擔機構設置方案
6) 其他 工業所有權에 관한 諸般事項
◎ 結果處理
1) 相談依頼會員社에 直接回答
2) 相談에 關聯되는 秘密事項은 保障되며 公
開可能한 事項은 本會 會誌 또는 文庫輯으로
刊行 配布
◎ 相談處 : 本會 發明振興部 및 調查資料部
(557-1077~8, 568-8263 · 8267)

發明特許資料 판매센터 移轉

本會 國內外 發明特許 관계 資料 판매센터가 지난 5月 4日 發明獎勵館의
移轉과 함께 서울시 江南區 三成洞 韓國綜合展示場(KOEX) 別館 2층 發明獎
勵館內로 移轉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活用바랍니다.

문의전화 : (서울) 551-5571~2